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폐 광 지 역 개 발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주)강원랜드)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18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및 납부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제1항)

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함.

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규정(안 제16조제2항)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

받기금 납부율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20~ 6. 2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를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익금은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익금의 100분의 25를”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익금”을 “총매출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u>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u> <u>리</u>) ① <u>법 제11조제5항에 따른</u> <u>이익금은 법인세차감전당기순</u> <u>이익으로 한다.</u>	제16조(<u>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u> <u>리</u>) ① ----- <u>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u> <u>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u> <u>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u> <u>공제한 금액---</u>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 른 <u>이익금의 100분의 25를</u> 카지 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 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 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② ----- -- <u>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u>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이익금의 징수방법 · 징수절</u> <u>차, 기금의 운영 · 관리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u> <u>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u> <u>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u> <u>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u> <u>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u> <u>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u> <u>금 운영 ·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u> <u>다.</u>	⑤ <u>총매출액</u> ----- ----- ----- ----- ----- ----- -----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5261